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
------------	---

발의연월일: 2020. 6. 1.

발 의 자:이종배·강기윤·강대식

강민국・곽상도・구자근

권명호 • 권영세 • 김기현

김도읍・김미애・金炳旭

김상훈 · 김석기 · 김선교

김성원 · 김승수 · 김영식

김예지 · 김용판 · 김 웅

김은혜 · 김정재 · 김태흠

김형동 · 김희곤 · 김희국

류성걸 • 박대수 • 박대출

박덕흠 • 박성민 • 박성중

박수영 • 박완수 • 박 진

박형수 • 배준영 • 배현진

백종헌 · 서범수 · 서병수

서일준 · 서정숙 · 성일종

송석준 · 송언석 · 신워식

안병길 · 양금희 · 엄태영

유경준 • 유상범 • 유의동

윤두현 · 윤영석 · 윤재옥

윤주경 • 윤창현 • 윤한홍

유희숙 • 이달곤 • 이만희

이명수 · 이양수 · 이 영

이 용 · 이종성 · 이주환 이채익 · 이철규 · 이헌승 임이자 · 장제원 · 전봉민 전주혜 · 정경희 · 정동만 정운천 · 정점식 · 정진석 정한민 · 정희용 · 조경태 조명희 · 조수진 · 조태용 조해진 · 주호영 · 지성호 최승재 · 최춘식 · 최형두 추경호 · 태영호 · 하영제 하태경 · 한기호 · 한무경 허은아 · 홍문표 ·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(10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대미문의 코로나-19 감염병의 장기간 창궐로 대학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강의 등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.

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. 또한 학생들은 코로나-19 감염병으로 평상시에 비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.

이에 정부는 코로나-19 같은 1급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(pandemic)의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재학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

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감염병 학비반환 지원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는 재학생에게 등록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8조의2(감염병 학비반환 지원)
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
	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
	제1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정상
	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
	국가 또는 학교는 재학생에게
	등록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
	<u>할 수 있다.</u>